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기본법」 개정(법률 제19114호, '22.12.27. 공포, '23.6.28. 시행)으로 산림·임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하위법령 제때 마련)

3. 주요내용

가.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방법 규정
(안 제8조 신설)

나.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안 제9조 신설)

다. 전담기관의 지정·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실태조사·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도시숲 자원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현황
2. 산림의 보전 및 보호 현황
3.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대응 및 복구·복원 현황
4.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현황
5. 산림휴양·산림교육·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이용 현황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림환경여건을 반영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 및 임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 작성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통계
2.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 통계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데이터베이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1. 산림데이터베이스를 통계 작성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 산림데이터베이스가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할 것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림 및 임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통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산림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분야별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관련 연구
2. 실태조사 결과의 수집·분석 및 통계 활용
3. 실태조사 현장 검증 및 통계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 결과 및 통계의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하기 위한 산림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에 따라 수행하게 될 업무를 위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보유할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
3. 전담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과 조직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실태조사·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산림·도시숲 자원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현황</u> <u>2. 산림의 보전 및 보호 현황</u> <u>3.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 재난 대응 및 복구·복원 현황</u> <u>4.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현황</u> <u>5. 산림휴양·산림교육·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이용 현황</u> <u>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림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u> <u>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u>

<신 설>

<신 설>

이용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
및 임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 작성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통계

2.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 통계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
라 산림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
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데이터베이스를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1. 산림데이터베이스를 통계 작성 목
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 산림데이터베이스가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할 것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
는 산림조합중앙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
인으로서 산림 및 임업 분야의 정
책연구 또는 통계와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업
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산림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분야별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관련 연구

2. 실태조사 결과의 수집·분석 및 통
계 활용

3. 실태조사 현장 검증 및 통계의 품
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 결과 및 통계의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하기 위한 산림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에 따라 수행하게 될 업무를 위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보유할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

3. 전담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과 조직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연 락 처	(042) 481 - 4166